

건강한 국민, 신뢰받는 병원,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 합니다.



사
단
법
인

대한병원협회



수 신 회원병원장

참 조

제 목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희 (이수진의원, 11254)

-
1. 최근 국회 발의된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대표발의, 11254)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, 관련 의견이 있으신 경우 <붙임 2> 양식을 작성하여 2025.7.18(금)까지 본회 정책국(E-mail: law@kha.or.kr, Fax: 02-705-9219)으로 제출 바랍니다.

<주요 내용>

-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기관 시설·인력·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,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
- *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는 경우,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- 붙임 1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(이수진의원, 11254)
2. 검토서 양식

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- 협회 업무 - 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. 끝.

대한병원협회장



대리 허경재 팀장 유소영 국장 장은혜

시행: 정책국 제2025-223호(2025.7.11.)

(04165)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 현대빌딩 13~14층 /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35 전송 02-705-9219 (대표FAX: 02-705-9209) E-mail: hkj@kha.or.kr